

## 무경계 전공제 운영 규정

제정 2025.01.0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‘무경계 전공제’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‘무경계 전공제’란 대학의 비전에 근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, 운영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의미한다.

② ‘자율전공’은 문화산업의 자기주도적 창의융(복)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편제정원이 있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.

③ ‘혁신전공’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 목적을 위해 편제정원 없이 실험적 교과목을 편성, 운영하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.

④ ‘전공 배정’이란 자율전공으로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학생이 희망하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무경계 전공제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율전공과 혁신전공으로 구성한다.

② 전공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.

**제4조(적용대상)** ① 자율전공 관련 규정은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혁신전공 관련 규정은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5조(교육과정)** ① 무경계 전공제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전공별로 편성한다.

② 자율전공 교육과정은 전공기초, 전공탐색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

| 구분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|---|
| 전공기초 교과목 | 학생 주도적 진로, 전공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정된 전공 기초 교과목 |
| 전공탐색 교과목 | 타전공 교과목 중 전공 탐색 및 관련 기초능력 습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교과목  |

**제6조(수강신청)** ① 대학 전체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자율전공의 전공기초 교과목 전체, 전공탐색 교과목 3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전공기초, 전공탐색 교과목을 제외한 타전공 교과목 수강은 ‘자율선택 수강신청’의 형태로 시행한다.

④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일반 수강신청 형태로 시행한다.

**제7조(자율전공의 전공선택)** ① 자율전공 소속 학생은 당해연도 내 소정의 기간 중 ‘전공배정 신청서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전공선택 신청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소정의 기간 중 신청서 미제출시 전공-학생 또는 전공-학부모간 상담을 거쳐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.
- ④ 1학년 1학기 과정 이수 중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하는 경우 미리 ‘전공배정 신청서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자율전공 소속 학생은 입학 후 1년간 소속 변경을 위한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.

**제8조(자율전공 전공배정)** ① 전공 배정은 신청자의 희망 전공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전공 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- ③ 전공 배정은 희망전공 역량평가(60%)와 1학년 1학기 직무능력평가(40%)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.
- ④ 학생 역량평가를 위해 스쿨(전공)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된 스쿨(전공) 평가위원을 구성하며, 포트폴리오 심사 외에 면접 등 별도의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스쿨(전공) 역량평가 결과와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전공 배정은 ‘무경계전공제운영위원회’에서 논의하여 의결한다.
- ⑥ 1지망 불합격시 2, 3지망으로 순차 배정한다.

**제9조(자율전공 이수학점 인정)** 자율전공 소속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배정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.

| 자율전공 이수과목     | 전공선택 후 이수구분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공기초 교과목      | 전공(필수,선택) 또는 일반선택 |
| 전공탐색 교과목      | 전공(필수,선택) 또는 일반선택 |
| 자율선택 수강신청 교과목 | 전공(필수,선택) 또는 일반선택 |
| 교양 교과목        |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      |

**제10조(운영)** ① 무경계 전공제 관련 업무는 교육개발처에서 담당한다.

**제11조(위원회)** ① 무경계 전공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전공 신청 및 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‘무경계전공제운영위원회’ (이하 위원회)를 설치 및 운영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교양교육원 포함 스쿨(전공)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집하며, 무경계전공제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12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논의 및 심의(의결)한다.

- 1. 전공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, 현장조사,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심의)

3. 자율전공 재학생의 전공 배정과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(심의)
4. 기타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3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14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전공배정 신청서

### 전공배정 신청서

|   |  |  |
|---|--|--|
| 신청자   | 스쿨(전공)   |  |
|   | 학 번  |  |
|   | 성 명  |  |
| 희망 전공   | 1순위  |  |
|   | 2순위  |  |
|   | 3순위  |  |
| 유의사항  | <p style="color: red;">1. 전공배정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함<br/>                 2.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공배정 신청을 반복할 수 없음<br/>                 3. 역량평가(60%)와 직무능력평가(40%)를 합산하여 전공배정을 함. 역량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.</p> |  |
| <p>본인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, 위와 같이 전공배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: _____ (인)</p> |  |  |
| <p>자율전공 지도교수: _____ (인)</p> <p><b>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   |  |  |